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높은 새우류가 지정검역물에 포함되도록 하고, 수입하려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이미 파견검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의 첨부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여행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지정검역물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등의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산질병관리원의 폐업신고를 하면서 「부가 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8. 1 ~ 9.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 중 “냉동·냉장한 전복류 및 굴”을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휴대하는 경우(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를 “휴대하는 경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3.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을 실시한 경우

제31조제1호 중 “검역증명서 원본(자가소비용 지정검역물은 제외한다)”을 “검역증명서 원본”으로 한다.

제37조의1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

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검역물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호,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3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p> <p>제28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p> <p>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 략) <u>3. 수산생물 파견검역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u> <u>4.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한 지정검역물인 경우</u> 5. (생 략) <u>6. 양식[축양(畜養)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인 경우</u> 7. · 8. 삭 제 9. ~ 11. (생 략) <p>제31조(휴대검역물의 신고) (생 략)</p> <p>1.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자가소비용 지정검역물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출입 공항 · 항만 등을</p>	<p>----- -----.</p> <p>제28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p> <p>①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u>3.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을 실시한 경우</u></p> <p><u><삭 제></u></p> <p>5.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9. ~ 11. (현행과 같음)</p> <p>제31조(휴대검역물의 신고) (현행과 같음)</p> <p>1. ----- ----- ----- ----- <u>검역증명서 원본-----</u> ----- -----</p>
---	---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 지원장에게 제출

2. · 3. (생 략)

제37조의13(휴업 · 폐업의 신고서)

① (생 략)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 · 3. (현행과 같음)

제37조의13(휴업 · 폐업의 신고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 설>